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명수

전화 042-470-4039 / 팩스 042-470-4240

보도자료
2020. 11. 2.(월)

제 목

언택트 시대! 비대면 화상조정 제도 도입 및 신속·간편한 형사조정 집행력확보 업무협약 체결

-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화상조정 방안을 마련
원거리 거주, 코로나19 등 건강상 사유 또는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다자간 화상콜이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형사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동시 면담 또는 분리 면담하는 등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형사조정 합의시 민사조정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간편한 공증지원제도 도입
종래 당사자가 공증비용 先 부담 후 검찰청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비보전을 받는 방식 ⇨ 위 업무협약을 통해 공증법인이 우선 공증 지원 후 검찰청에 직접 공증 수수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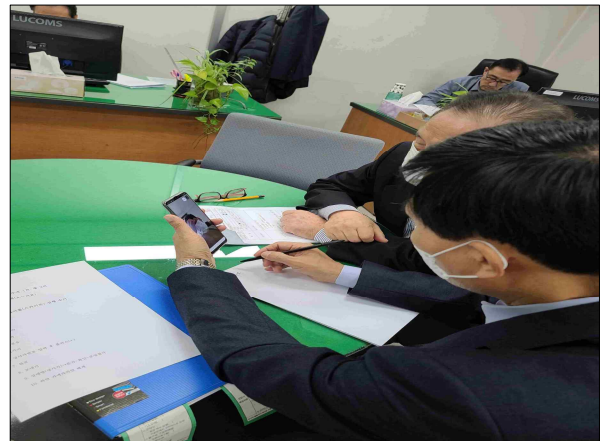
1

원격 화상조정 시행

- 대전지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조정 방안으로 「원격 화상조정」 시행
- 직장이나 원거리 거주로 인한 물리적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우려,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대면 조정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대화 모델 제시할 필요성 있어 '화상 조정' 도입

- 다자간 화상 콜이 가능한 앱을 이용하여 형사조정위원 2인이 가해자 및 피해자를 동시 면담하거나 필요시 각각 분리하여 면담
 - ▲ 화상 콜 사용이 익숙한 세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안보다 감정적 다툼으로 인한 폭행, 모욕, 경미한 사기 등 사건 중심으로 시행
 - ▲ '20. 10. 21.부터 형사조정 상근위원 중심으로 매주 2건씩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2 이젠 형사조정 합의로 강제집행까지!!

- 형사조정은 피해금 변제를 위한 합의시 민사조정과 같은 집행력이 없어 합의 조건 불이행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05. 1.부터 민·형사 통합시스템으로 형사조정 합의사항에 공증을 연계하여 공증수수료를 검찰에서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공증 수수료 지원은 당사자가 자비로 공증수수료 先 부담 후, 검찰청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비보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들 이용에 절차적 애로사항 있음
- '20. 10. 28. 관내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 체결
 - 대전지방검찰청은 절차 간소화, 당사자 편의 도모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4곳과 「형사조정 공증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형사조정 합의문에 당사자가 공증을 원하는 경우 위 업무협약을 통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우선 공증지원 후 검찰에 직접 공증수수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간편한 조정 집행력확보 방안 마련

형사조정 합의 후 금전적 피해변제 불이행시 바로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 구체적인 처리 절차

- ① 공증지원 제도 안내 ⇒ ② 형사조정실에 당사자 지원의뢰 요청 ⇒ ③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내 ⇒ ④ 공증 법인에서 합의사항 공증 ⇒ ⑤ 공증 법인이 증빙서류 첨부, 공증수수료 검찰청에 청구 ⇒ ⑥ 검찰청 재무회계 담당자 회계 처리

3

향후계획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우려 등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 비대면 화상조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시간제로 화상조정 확대할 계획
-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형사조정 성립시 민사조정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 부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있는 당사자에게 공증비용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